

# 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## I 개정 필요성

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'세칙') 개정 및 「동 절차」(이하 '절차') 제정에 따라 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(이하 '운용기준')을 개정
  - C2업무 효율화 방안(자료입수 전산화, 심사방식 변경 등) 시행을 위한 것으로,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표준안\*」을 참고하여 개정

\* 금융기획팀 권고안

## II 주요 개정 내용

- 사후심사, 금융기관 평가관리 도입 등 업무 프로세스 개편 반영
  - 사후심사 자료제출 목록 및 평가관리 기준 명시(개정안 제3조, 제4조)
  - 지역본부의 사전심사 및 자금 배정 관련 조항 삭제(현행 제11조, 제12조)
- 세칙 및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 삭제

- 배정대상 금융기관, 지원부문, 지원대상 대출, 지원한도, 지원일몰 제도 등 공통사항을 세칙 및 절차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(현행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)

□ 기타 세칙 및 절차 제·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

- 지원대상 제외업종 확대

- 법무사업, 공중 보건 의료업 등 추가(<별표2>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)

- 복수업종 영위 업체의 주업종 판단 기준, 각종 인증 기업의 인증서 유효기간 판단 기준 명시(<별표1>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' 각주)

-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중 지원대상 농림수산업자 표현 정비 (<별표1>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')

**Ⅲ 시행일**

---

□ 2024년 4월 1일